

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이의제기자 (신청인)	성명(상호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(사업장)	전화번호	
	권리관계		
상대방	배분순위	채권자	
	배분금액	원	이의제기금액 원
공매재산	공매재산의 표시		
	처분청	체납자	배분기일

이의제기 사유 (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)

「국세징수법」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100조에 따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(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4항 및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제기 포함)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2. 배분의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위 심판청구,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

접수번호	접수일자	신청인 성명
------	------	--------

○ ○ 세 무 서 장 직인